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 12.

사회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2.11.23(금) ~ 11.30(금) - 8일간(휴일 포함)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 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질의 및 답변 - 종합평가 및 강편 	

※ 토요일 ~ 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13년도 예산안 사전심사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일일보고 : 감사 직후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붙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2012. 11.23 (금)	김종태	<p>[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용자 사업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여 2012년 11월 현재 기금액이 총 27억원, 용자금액이 총 7억 2100만원임.</p> <p>2012년 용자 지원 가구수와 금액은 8가구 1억 6900만원으로 2011년 1가구 4000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기금 총액에 비해 실적 미흡함</p>	<p>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용자기회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것</p>
2	2012. 11.27 (화)	김주범	<p>[경로당 물품 지원 시기 부적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여야 하나 연중 수시로 물품 지원을 하고 특히 제18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11월 26일에 일부 노인정에 물품(TV, 진공청소기)을 전달하였음</p>	<p>노인정에 물품 전달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11월 26일에 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며 관련선거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등 정기적으로 물품을 지원할 것</p>

3	2012. 11.27 (화)	김주범	<p>[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업체 선정]</p> <p>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을 신규업체에 맡길 경우 동판 신규제작으로 인한 원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기존 업체들과 수의계약 함</p>	<p>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업체를 기존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예산절감과 봉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4	2012. 11.28 (수)	김종태	<p>[구립 청소년독서실 용도 전환 검토]</p> <p>구립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정보문화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개관,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등 환경 변화와 독서실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고 이용률이 30%대인 곳도 3개소가 있음</p>	<p>현저히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을 시범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북카페, 휴(休)카페 등 청소년 학습 및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5	2012. 11.29 (목)	김종태	<p>[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개선]</p> <p>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2012. 7.31 개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이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등으로 강화되었으나 현재 센터의 사용면적 등 시설이 미흡함 또한 센터의 장은 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센터장을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하고 있음</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독립된 공간을 조기에 확보할 것 센터장을 2012년 말까지 전임토록 할 것 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 조직 구성을 검토할 것</p>

6	2012. 11.29 (목)	오현숙	<p>[공원 내 체육시설물 보완 및 관리 철저]</p> <p>각 공원 등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특히 양평2동의 야외 배드민턴장은 시설이 매우 좋음. 그러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이 보강되어야 함</p>	<p>문래공원 내 농구대가 한쪽에 방치되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 신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이용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운동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음 영등포공원 내 농구장 주변에 벤치를 설치해 주기 바람</p>
7	2012. 11.29 (목)	오현숙	<p>[위원회 운영 관련]</p> <p>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p>	<p>각 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8	2012. 11.29 (목)	오현숙	<p>[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자 문제]</p> <p>영등포역 주변 노숙자들이 낮에는 여자들을 상대로 위협적으로 구걸행위를 하고 밤이면 대합실과 통로를 점유하여 음주,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p>	<p>관광도시 영등포와 살맛나는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느슨한 단속과 식사 제공 등으로 노숙자가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타 지역의 노숙자가 영등포로 모여 노숙자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숙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9	2012. 11.29 (목)	오현숙	<p>[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의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 결과 관련]</p> <p>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대상이 미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도 일부 등에 편중되었음</p>	<p>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대상에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제외하기가 부적절하다면 일부의 사업은 시급성과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로과에서 자체 선정하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추가 선정하는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시 단위사업별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선정하여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10	2012. 11.29 (목)	김길자	<p>[건물 차량 진출입구 설치 유도]</p> <p>일부 상가건물에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무분별한 인도출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있음</p>	<p>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가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차량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를 유도할 것</p>
11	2012. 11.29 (목)	김길자	<p>[건축후퇴선 관리로 보행자의 편의 확보]</p> <p>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건축후퇴선은 주거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의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제임. 공공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건축후퇴선은 엄연히 보행자의 편의확보를 위해 보장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의 편의만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적치물 등 때문에 보행자 및 장애인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p>	<p>건축후퇴선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로 규정된 곳이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보행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물의 건축후퇴선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의 영업시설이나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할 것</p>

12	2012. 11.29 (목)	김길자	<p>[위법건축물(무단용도 변경) 관리 철저]</p> <p>관내 일부 근린생활 용도의 건물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영업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p>	<p>무단용도 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p>
13	2012. 11.29 (목)	김길자	<p>[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장난감 대여 도서관) 건립 검토]</p> <p>기본적인 보육복지 시설인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서울시 16개 자치구에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구에는 아직도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타 구 시설로 대여하러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음</p>	<p>주민들이 타 구 시설에 가서 대여하는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장난감 대여 도서관을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14	2012. 11.29 (목)	김길자	<p>[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사업 검토]</p> <p>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약 42%가 20~30대임. 발달 장애인은 다소 낮은 지능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취업교육이 힘들어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가족들이 부양하여 부담으로 남겨지는 게 현실임. 하지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취업교육을 통하여 단순작업을 요하는 곳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임</p>	<p>발달 장애인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활 사업 필요</p>

15	2012. 11.29 (목)	김길자	<p>[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체 재위탁 심사기준 보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심사 기준표의 심사 배점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재위탁 선정 기준이 60점 이상으로 되어있어, 심사결과가 보통만 나와도 심사를 통과하여 재위탁으로 결정되게 됨</p>	<p>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재위탁 선정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위탁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함 민간위탁제 복지관 등, 심사선정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재조정할 것</p>
16	2012. 11.29 (목)	김길자	<p>[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사업 보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신청인들의 부동산 담보제공, 신용도 등 대출요건에 충족되기 어려워 정말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의 대출은 어려운 실정임</p>	<p>대출요건 등을 더욱 완화하는 등 저소득 주민이 최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p>
17	2012. 11.29 (목)	신현도	<p>[노점상 단속 철저] 노점상들이 차도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자과 차량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로정비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한 편임</p>	<p>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집중 단속 필요 노점상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p>

18	2012. 11.29 (목)	신현도	<p>[경로당 지원 예산이 일부 경로당에 편중됨] 경로당 관련 노인복지 사업 예산이 모든 경로당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하나 일부 경로당에 편중되어 지원되었음</p>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주체(구립·사립)와 상관없이 이용자수, 시설 규모 및 노후 정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바람
19	2012. 11.29 (목)	윤준용	<p>[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개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금 5억 5천만원 중 4억 9,10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이 중 2억 8,500만원은 교부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억 7,700만원은 사업이 미추진되어 불용 처리될 예정임</p>	2013년부터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심의하여 전반기 1차 심의 시 탈락한 공동주택에게 후반기 2차 심의에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불용 처리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	2012. 11.30 (금)	김길자	<p>[소방도로 관리 철저] 소방도로에 불법적치물,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p>	소방도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내 소방도로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함
21	2012. 11.30 (금)	최재문	<p>[관내 대형공사장 주변 관리 철저] 대형 공사시 공사장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장 자재 정리정돈, 비산먼지 제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구민안전과 도시청결 유지해서 구민 민원 해소</p>	도로를 굴착 시 빠른 시간 내 원상 복구하고 공사 시행 전과 같이 마무리를 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할 것 대형공사장 등에서 자재보관을 적절한 장소에 하고 공사 후 공사장 주변 정돈을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시청결을 철저히 할 것